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86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김대식 · 조정훈 · 정성국
이헌승 · 고동진 · 곽규택
김선교 · 박덕흠 · 서천호
서지영 · 조지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의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 확정 전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범죄 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

고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가해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 차단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법률 제 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인정되는 사람”을 “인정되는 사람(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생 략)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 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u>인정되</u> <u>는 사람</u> 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행 이 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 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 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인정되</u> <u>는 사람(13세 미만 미성년자</u> <u>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u> <u>자 또는 피고인을 포함한다)</u> -- -----. ----- ----- -----. ③ ~ ⑧ (현행과 같음)